

충청북도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행 정 소 방 위 원 회
수석전문위원 양 권 석

충청북도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회부경위

본 개정 조례안은 2009년 6월 2일 조영재 의원 등 7인으로부터 발의되어 2009년 6월 5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2. 제안이유

새마을 장학금 지급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· 보완하고, 법제처의 「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」 기준에 따른 용어 및 체계를 정비하여 조례를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조례명칭을 알기 쉽게 변경.

- 조례명을 “충청북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”로 개정

나. 장학금 중복지급에 관한 단서조항 삭제(안 제3조 제2항)

다. 법제처의 「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」 기준에 따른 용어 및 체계 정비

- 항과 조문사이를 띄어 씀(안 제3조, 제5조, 제6조, 제7조, 제8조, 제9조, 제11조)

- 제1조 목적에 약칭의 사용 금지
- 및, 또는, 인, 이외 등의 자구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체제에 맞춤.

4. 검토결과

조영재 의원 등 7인으로부터 발의된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,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명을 개정하고 둘째, 운영상 미비점이 드러난 장학금의 중복수혜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셋째,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각 조문의 표현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은 없음.

붙임 충청북도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.